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19. 7. 4 내규 제413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회계규정 제150조에 의하여 재무부서의 장이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회계관계직과 그 직원, 주관부서 등은 회계규정시행내규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공단에서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사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 사항
2.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인 공사,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제5조 제외)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있어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총괄)이 계약사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총괄)이 계약사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사업
2. 조달청에 계약을 위임할 필요가 있는 사업
3. 해당년도에 1회 이상 심의를 실시한 사업
4. 매년 반복되는 사업 (최초 계약 요청시는 심의)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관련 심의를 거친 사업
6. 회계규정시행내규 제85조 제1항에 따른 계약법령 등에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수시로 구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법무팀장,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총괄)이 지정하는 자로서 해당분야의 지식을 보유한 직원
2. 외부위원 :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는 자

② 전 항의 외부위원 선임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재직자 또는 재직했던 자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재무관・분임재무관 또는 계약담당직원
7. 시민 옴부즈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8.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계약담당으로 하되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심의대상 안건의 관계 공무원 및 감독기관
3. 기타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전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 및 준비 소요일수 등을 감안하여 재무부서의 장에게 위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계약심의 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았을 경우 재무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등) ①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할 때에는 개최 4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제출하여 한다.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참석위원에게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 요청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정확한 의안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되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에 한하여 심의를 연장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총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심의결과 및 활용) ① 위원회는 심의종료 후 위원별 계약심의 검토의견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심의안건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무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 및 심의의결서를 근거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최초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계약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제4조 제4항에 의한 회의록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4. 심의안건
5. 발언요지
6. 의결내용

② 회의록은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단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1조(시민옴부즈만의 참관) 감사부서에서 위원회의 심의내용이 투명성, 공정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시민옴부즈만으로 하여금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하여 직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 제5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9.7.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

계약심의 요청서

심의제목	
발의부서	
목 적	
심의안 (개요)	
적용법규	
부서의견	
붙임서류	

년 월 일

서울시설공단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 관련)

위 임 장

아래 위임인은 아래 대리인이 제 회 계약심위원회(20 . . .)에 출석하여 심의 의결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합니다.

1. 위 임 인

가. 성 명 :

나. 소속 및 직위 :

2. 대 리 인

가. 성 명 :

나. 소속 및 직위 :

년 월 일

위임인 : (인)

서울시설공단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 관련)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서울시설공단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제9조 관련)

계약심의 검토의견서

심의번호		심의방법		발의부서	
안 건 명					

❁ **검토의견 :** 원안의결 ( ) / 수정의결 ( )

❁ **변경(안)** - (수정의결시)

❁ **변경사유(수정의결시) :**

년 월 일

심의위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제9조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번호		심의방법		발주부서	
안 건 명					
발 주 부서안 (원 안)					
의결내용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서울시설공단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_____ [서명]

위 원 : _____ [서명] **위 원 :** _____ [서명]

위 원 : _____ [서명] **위 원 :** _____ [서명]

위 원 : _____ [서명] **위 원 :** _____ [서명]